

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8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최악의 전·월세난에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방식의 다양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
- 나.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SH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SH공사
- 관련법령
 - 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조례 :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
 - 민선6기 6만호 공급 달성 및 주택재고의 10%까지 지속 공급
 - 건설형, 매입형, 임차형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**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**
 -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으로 생활문제 해결하는 공동체주택 공급
 - ‘빈집’ 리모델링후 임대주택으로 활용사업 추진
 -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저렴주택 확보 등
- 다. 출자의 필요성

-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,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SH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
- 따라서,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및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구민수 (☎2133 - 7017)